|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|
| --- |
| 전 략 산 업 과 |

#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구 미 시

#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연월일 : 2026. 4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필요성 증대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어,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 전략과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 관련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발굴·육성 지원을 하고자 함

나.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전문적,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, 제9조(관련사업 추진), 제10조(경비보조)

2) 필요성 :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현황조사, 기술·사업성 분석,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사무로, 수소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전반

1) 구미시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선정

2) 수소기업 기술사업화·판로개척·컨설팅 등 기업지원사업 운영

3) 지원기업 사업 수행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

4)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5. ~ 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270백만원(도 81, 시189)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| 인건비 | 직접비 | 간접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270 | 27 | 242 | 1 | |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'26.02.12.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)

## 3. 부서의견

○ 본 사업은 지역 수소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, 체계적인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.

○ 수소산업 기업지원 전문성과 수행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수소기업 육성 및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3)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, 제9조(관련사업 추진), 제10조(경비보조)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 관계법령

## □「지방자치법」

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**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**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

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**제6조(의회 동의)**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## □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**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**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(이하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공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
2. 문화 확산사업

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**제9조(관련사업 추진)**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경비보조)**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#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는 수탁기관 내부 급여기준을 적용하고, 조사·분석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전담 인력을 편성하였음

나. 사업비는 국내외 인증 취득, 시제품제작, 판로개척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비 위주로 산정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세출 | ○ 인건비 | 27,000 | - | - | - | - | 27,000 |
| | ○ 직접비 | 242,000 | - | - | - | - | 242,000 |
| | ○ 간접비 | 1,000 | - | - | - | - | 1,000 |
| | 계 | 270,000 | - | - | - | - | 270,000 |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 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도 비 | 81,000 | - | - | - | - | 81,000 |
| 시 비 | 189,000 | - | - | - | - | 189,000 |
| 민 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 타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합 계 | 270,000 | - | - | - | - | 270,000 |

5. 부대의견 : 연간 위탁금액은 사업계획, 예산심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팀 조영재(☎480-6197)

## 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| 구 분 | 금액(천원) | 산 출 근 거 |
|---|---|---|
| 합 계 | 270,000 | |
| 인 건 비 | 27,000 | **· 참여직원 인건비 27,000천원**<br>· 참여인력(본부장)1명×8개월×4%참여율 3,314천원<br>· 참여인력(팀장)1명×8개월×5%참여율 3,590천원<br>· 참여인력(대리)2명×8개월×5%참여율 8,400천원<br>· 참여인력(주임)3명×8개월×10%참여율 6,656천원<br>· 참여인력(사원)3명×1개월×9%참여율 5,040천원 |
| 직 접 비 | 242,000 | **· 기업지원비 233,000천원**<br>· 홍보물제작 및 전시회(홈페이지제작, 홍보자료제작,전시회 부스설치비 등)<br>3개소 18,000천원<br>· 시제품 제작(견본품·시약·재료비,제작비,장비·기자재 임차비 등)<br>3개소 197,000천원<br>· 제품인증 국내외 공인인증획득(특허·실용신안·상표디자인 출원비 및 특허법인)<br>3개소 18,000천원<br>**· 연구과제추진비 9,000천원**<br>· 전문가 자문(300,000 × 5명 × 4회) 6,000천원<br>· 국내 여비(100,000 × 6명) 600천원<br>· 평가위원회(25,000 × 4명 × 4회) 400천원<br>· 회계정산비(2,000 × 1식) 2,000천원 |
| 간 접 비 | 1,000 | **· 연구지원경비(1,000 × 1식) 1,000천원** |

| 소 관 부 서 | | 전략산업과 |
|---|---|---|
| 입 | 과 장 | 김 철 년 |
| 안 | 팀 장 | 김 영 필 |
| 자 | 담 당 자 | 조 영 재<br>(480-6197) |